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4. 1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4월 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4년 4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4년 4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김숙희)

가. 제안이유

○ 종전『하수도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징수절차 위임조항이 삭제(2007.09.28)되었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문화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폐지조례안은 종전 상위법령인 「하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07.9.27「하수도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또한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7.12.21제정, 2008.6.22 시행)이 시행되면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42조제1항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를 운영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291 호

제출연월일 : 2014.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종전『하수도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징수절차 위임조항이 삭제(2007.09.28) 되었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문화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하수도법 시행령」제4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2.3.~2014.2.23, 20일간)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